「경영사학」 제29집 제4호(통권 72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4. 12. 31. pp. 185~208

논문접수일 : 2014년 10월 23일
최종수정일 : 2014년 12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14일

기업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관한 연구

신 용 준*

요 약

본 연구는 기업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 규정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행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하나로 묶을 필요성이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어도 통일적으로 기술을 함으로써 법률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독립적인 별도의 용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또는 용어를 해당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친족의 범위는 해외 여러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광범위하다. 따라서 각 법률에서 인식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통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채무보증기업집단의 지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한도를 실증분석을 통해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채무보증기업집단의 지정제도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업규모, 산업특성, 시장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공정거래법, 증여세

* 신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shinyj87@daum.net

I. 서 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 거래는 감사보고서에 기록해야 할 당해 법인과의 모든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를 말하며,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의 경우 보고기업에 대한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과 그 가족 및 주요 경영진 일원과 그 가까운 가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 보고기업과 해당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안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이나 조인트벤처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내부거래란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계열회사에 대한 거래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 또는 배우자 등 친족, 동일인이 30% 이상 소유한 비영리법인 등과 함께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 동일인이 대표이사 임면이나 전체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회사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이와 같은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의 정의를 비교해 볼 때, 계열회사의 범위보다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으며, 따라서 특수관계인에 계열회사가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자율적 공시가 인정되는 경우 유의적 관련성이 적거나 금액이 작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지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1]. 또한 특수관계인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범위가 법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법」상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의 규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 규제 방법이다[2].

본 연구는 기업의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법률 규정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행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용어가 법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률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하나로 묶을 필요성이 있다. 또한 특수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013), "5대 재벌 계열사의 특수관계자거래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 실태조사". p.2 .

2) 김진태와 배종일(2013),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의 변동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9권 제4호. p.335

관계인에 대한 용어도 통일적으로 기술을 함으로써 법률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독립적인 별도의 용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또는 용어를 해당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는 임원 등의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각 법률에서 친족의 범위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친족의 범위는 해외 여러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광범위하다. 물론 친족의 범위는 각국의 고유한 전통과 관습에 의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별 친족의 범위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전통 및 관습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친족에 대한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 법률에서 인식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통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채무보증기업집단의 지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한도를 실증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채무보증기업집단의 지정제도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업규모, 산업특성, 시장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II.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관련 법률 규정의 변천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규정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의 변천

우리나라는 법률 제5581호에 의거 1998년 12월 28일 「법인세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개정시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1998년 「법인세법」 전문개정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료율 · 리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률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후 2002년 12월 30일 「법인세법」 일부개정시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료율"과 "리자율"을 "요율" 및 "이자율"로 변경하였다. 또한 2009년 5월 21일, 2010년 12월 30일 내용상의 문맥에 일부 수정이 있었으며, 2011년 12월 31일에는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변경을 하였다.

2) 현행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이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③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④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 포함)·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⑤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⑥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⑦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⑧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⑩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⑪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

⑫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체적으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52조 제3항).

3)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쌍방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은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②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③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이 경우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말한다(서이 46012-10185, 2002.1.31.).

(2) 주주 등(소액주주 등 제외)과 그 친족

“주주 등”이라 함은 거주자, 비거주자,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와 출자자를 말한다. 그러나 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주(소액주주 제외)로서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소액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시기 이후부터이다(서면2팀-290, 2006. 2. 6.).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 등”은 해당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해당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유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법령 제50조 제2항). 따라서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지배주주 등”이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해당 주주 등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친족이란 그 출자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이 때 주주인 자연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주식은 이를 합산하여 출자(주식)비율을 산정하여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80누 569, 1981. 11. 24.). 또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친사촌매형(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서면2팀-1270, 2005.08.05.).

⑶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임원"이란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가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법인의 사용인"이란 당해 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한다(법인 46012-678, 1995.3.10.). 또한 "주주 등의 사용인"이란 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만을 말하며, 그 법인의 사용인은 포함하지 아니하며(법인 46012-142, 1993. 9. 3.), 출자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법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 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라 함은, 주주 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서면2팀-2969, 2004. 12. 21.).

⑷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그 친족 그리고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예를 들어 “갑”법인의 사용인이 “을”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와 “갑” 법인에 출자한 출자자의 친족이 “을”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서면2팀 - 799, 2004. 4. 16.). 또한 “을” 주식회사가 “갑” 주식회사에 주식 100%를 출자하였고 “병” 주식회사의 사용인이 “을” 주식회사에 65%를 출자한 경우 “갑” 주식회사와 “병” 주식회사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법인 1264.21-2409, 1984. 7. 24.).

⑸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1) 또는 3)에 게기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A법인이 출자자와 그 친족이, B의료법인의 출연금의 50% 이상 출연하고, C법인의 지분 30% 이상 소유한 경우 A, B, C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두, 526, 2002. 6. 11.). 그러나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그것만으로 법인과의 사이에 무슨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3 누 19146, 1994. 8. 26.).

⑹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또는 5)에 게지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갑”이 A법인에 20%를 출자하고, “갑”의 배우자가 B법인과 C법인에 각각 70%, 90%를 출자한 상황하였으며, B법인과 C법인이 D법인에 각각 48%와 20%를 출자한 경우 B법인과 C법인이 D법인에 출자한 합계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법인 46012-137, 2001. 8. 20.). 그러나 A · B법인이 다음과 같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A · B 법인간에 특수관계있는자로 보지 아니한다며(법인 46012-1389, 1994 . 5. 13.).

⑺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A법인이 B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A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갑”은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⑻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법인이 주식발행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서2 46012-11902, 2003.10.31.). 이때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하는 기업집단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서면2팀 - 1450, 2005. 9. 12.).

또한 합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업무집행사원인 내국법인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지분 10% 보유)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100% 출자한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서면 2팀-249, 2006.02.0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1)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변천

정부는 2011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정부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한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②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12월 31일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년 12월 31일 신설된 규정에서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곱하도록 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강화를 위하여 2013년 1월 1일 법개정을 통해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로 수정을 하였다. 또한 2014년 1월 1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 제외하였다.

2) 현행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정상거래비율"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수혜법인"이라 함)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한계보유비율"이라 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함)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3]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2항). 또한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3항).

3. 「상법」 상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1)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의 변천과정

3)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11년 4월 14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사의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4월 14일 「상법」 개정시 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

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상법」 제392조의2 제1항).

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②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만약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상법」 제392조의2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서 사업기회란 상당히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새로운 사업분야의 진출이나 기존의 회사 영업부문 중 일부를 분할하여 영위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사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로 임기만료 이전에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또한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결의에 참가한 의사로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가 없는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99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규정의 변천과정

우리나라는 1980년 12월 3일 법률 제3320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점차 전환하되, 민간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통하여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는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다.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결정, 출고조절, 경쟁사업자의 삼가제한등 람용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독과점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회사의 합병,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금지하되,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하도록 한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한 차관,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계약 등의 국제계약은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경쟁제한적인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다.

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가격인상차액으로 얻은 수입의 100퍼센트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현행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조항은 이를 삭제하고 물가에 관한 조항은 존치하도록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90년 1월 13일 법 개정을 통해 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규제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를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법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고시한 행위로 하던 것을 법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되면 모두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도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류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허위·과장광고외에 상호등 사업자자신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추가하고 이를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1990년 1월 13일 개정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률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1996년 12월 30일 법 개정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은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수정을 하였다. 또한 제1항 제7호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규정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고 규정을 하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1999년 2월 5일 법 개정시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로 수정하여 부당행위의 여부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제6호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8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명시되지 않은 다른 부당행위도 법적 제재의 범위에 포함을 하였다. 더불어 제4항의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고객유인"으로 수정을 하였다.

2007년 4월 13일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

산 · 유가증권 · 상품 · 용역 ·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서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수정을 하였다. 또한 제2항의 규정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에서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수정을 하였으며, 제3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 ·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다. 더불어 제4항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 · 고시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였으며, 제5항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였다. 그리고 제6항에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규정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④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⑤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⑥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 대여금 · 인력 · 부동산 · 유가증권 · 상품 · 용역 ·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⑦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한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항).

III.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현황[4)]

1. 최근 6년간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공시 현황

2012년 10월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은 622개 기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특수관계인 간의 매출이 발생된 기업은 각각 325개, 311개, 295개, 276개, 242개, 170개 기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수관계인 간의 매입거래의 경우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284개, 270개, 260개, 228개, 211개, 159개 기업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의 경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361개, 397개, 415개, 427개, 457개, 479개 기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수관계인 간의 매입의 경우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393개, 427개, 448개, 465개, 470개, 481개 기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간의 매출, 매입, 수익, 비용의 거래를 한가지 이상 한 기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568개, 585개, 589개, 584개, 586개, 580개로 연도별 차이는 미미하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세부적 현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특수관계인 간의 매출과 매입거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 및 비용 거래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 거래는 연도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기업의 고유 목적사업과

4) 본 장의 내용은 김진태(2013),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와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일시적 거래 또는 기업의 고유 목적사업 이외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공시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특수관계인 매출	325	311	295	276	242	170
특수관계인 매입	284	270	260	228	211	159
특수관계인 수익	361	397	415	427	457	479
특수관계인 비용	393	427	448	465	470	481
특수관계인 거래*	568	585	589	584	586	580

* 특수관계인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매출, 매입, 수익, 비용 중 한 가지 이상의 거래를 특기사항으로 기재한 기업을 의미함.

2.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비용을 제거한 당기순이익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특수관계인 간의 매출 및 매입거래는 감소하고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 및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시적이며, 기업의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경영자가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 및 비용 거래를 통해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와 같은 회계부정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인 간의 매출 및 매입거래의 경우 기업의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판매비 및 관리비에 대한 관련성이 높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 및 비용은 기업의 고유 목적사업과는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판매비 및 관리비와 관련성이 낮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 및 비용 거래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비용을 차감한 값을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영향을 제거한 당기순이익(NIBR)을 계산해 보았다. 아래 〈표 2〉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비용을 제거한 당기순이익 결과를 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값은 각각 103억원, 341억원, -89억원, -546억원, 33억원, -84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하위 25%의 값은 모두 음(-)의 값을 가지고 있어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대부분은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과 비용을 제거하면 많은 기업이 당기순손실을 보고하게 된다.

〈표 2〉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비용 제거 후 당기순이익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표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25%	중위수	75%	최대값
2006년도	433	10,320	1,244,749	-16,038,300	-94	9,648	42,997	9,414,610
2007년도	471	34,111	1,548,269	-18,695,708	-813	11,139	47,400	20,006,746
2008년도	479	-8,943	1,775,204	-22,550,349	-8,128	8,089	43,830	21,744,817
2009년도	488	-54,616	1,525,849	-20,745,555	-3,362	10,466	45,168	8,209,283
2010년도	507	33,280	2,304,023	-34,570,569	-2,758	12,547	60,751	28,854,748
2011년도	488	-84,305,88	191,534,028	-4,363,080,000	- 11,470	5,956	50,175	27,943,400

위 〈표 2〉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비용을 제거한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손실 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의 수익·비용의 제거를 통해 보고이익인 당기순이익(손실)이 바뀐 기업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 3〉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비용 거래를 통한 보고이익 변동 현황을 보면, 당기순이익(NI)과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영향을 제거한 당기순이익(NIBR)의 부호가 모두 양(+)인 기업은 1,814개 기업이며, 모두 음(-)인 기업은 411개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나,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영향을 제거한 당기순이익(NIBR)이 음(-)인 기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62개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당기순손실을 보고하였으나,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영향을 제거한 당기순이익(NIBR)이 양(+)인 기업은 같은 기간 110개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특수관계자 간의 수익·비용 거래를 통한 보고이익 변동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NI〉0 and NIBR〉0	NI〈0 and NIBR〈0	NI〉0 and NIBR〈0	NI〈0 and NIBR〉0	합 계
2006년도	305	56	53	19	433
2007년도	332	46	75	18	471
2008년도	293	88	71	27	479
2009년도	333	75	66	14	488
2010년도	255	60	83	9	407
2011년도	296	86	114	23	519
합 계	1,814	411	462	110	2,797

이와 같은 결과는 경영자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 적자를 회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5]. 또한 기업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 손실을 감수하게

5) 이에 대한 사례로 최근 신세계 기업집단 소속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열사인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법으로 약 33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신세계SVN의 2010년 당기순이익인 26억 5,600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당기순이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3. 특기사항 공시 현황

특기사항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업과 관련된 중대한 정보가 존재할 때 감사인이 이를 감사보고서의 별도문단으로 기재하여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이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감사준칙은 불확실성과 계속기업에 대한 가정뿐만 아니라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 회계기준이나 추정의 변경, 공시관련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도 특기사항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영순 등 2004).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을 기재한 기업은 2010년 1,722개 상장기업 중 678개 기업(39.4%)에서 2011년 1,738개 기업 중 473개 기업(27.2%)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유가증권 상장법인 719개 기업 중 230개 기업(32.0%)이 특기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코스닥 1,003개 기업 중 448개 기업(44.7%)이 특기사항을 기재하였다. 2011년도의 경우 732개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149개 기업(20.4%)이 특기사항을 기재하였고, 1,006개 코스닥 상장기업 중 324개 기업(32.2%)이 특기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가증권 상장법인보다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특기사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특기사항 기재 회사 현황

(단위 : 사, %)

구분	2010년						2011년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특기사항 기재	230	32.0	448	44.7	678	39.4	149	20.4	324	32.2	473	27.2
특기사항 미기재	489	68.0	555	55.3	1,044	60.6	583	79.6	682	67.8	1,265	72.8
합 계	719	100.0	1,003	100.0	1,722	100.0	732	100.0	1,006	100.0	1,738	100.0

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은 크게 회계변경,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 및 지배구조의 변화, 중대한 불확실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 특기사항 기재건수는 2010년 1,216건에서 2011년 808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사항 종류별 가장 높은 기재빈도를 나타내는 항목은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특기사

익의 126.8%를 특수관계자 관계를 통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다. 결국 신세계SVN는 당기순손실이 발생이 되었지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신세계그룹 3사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되며, 주주의 부가 특수관계자 기업에 이전되게 된다.

항으로 2010년 381건(31.3%)과 2011년 198건(24.5%)이다. 특기사항 종류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특기사항 종류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회계변경	기준서 제정에 따른 회계변경	5	0.4	39	4.8
	회계처리방법 변경	15	1.2	17	2.1
	전기재무제표 수정	17	1.4	10	1.2
	자산재평가	45	3.7	3	0.4
	회계추정의 변경	10	0.8	3	0.4
	기타	5	0.4	29	3.6
중요한 거래	특수관계자	381	31.3	198	24.5
	B/S일 이후 사건	76	6.3	65	8.0
	주요 유가증권 매입·매도	22	1.8	20	2.5
	기타	65	5.4	46	5.7
영업환경및 지배구조의 변화	합병 등	116	9.5	66	8.2
	워크아웃 등	25	2.1	17	2.1
	증자 등	52	4.3	18	2.2
	주주변동	31	2.5	12	1.5
	기타	36	3.0	18	2.2
중대한 불확실성	계속기업 가정	93	7.6	72	8.9
	소송 등	71	5.8	40	5.0
	기타	29	2.4	9	1.1
내부회계관리제도		13	1.1	1	0.1
기 타		109	9.0	125	15.5
합 계*		1,216	100.0	808	100.0

* 특기사항 종류별 중복기재 포함

IV.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관련 법률 규정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개선방안

1. 특수관계인 범위 및 용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각각의 법률은 그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범위 또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즉,「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조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은 회사의 자산 유용의 방지,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

수관계인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상법」이나 「사적독점금지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특별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미국,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관련된 부분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6].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어의 경우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 지배주주의 친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 특수관계인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을 하고 있다. 또한 「상법」에서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서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임원 또는 주요주주, 임직원 및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를 개별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법의 해석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의 이용자 입장에서 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어가 통일적이지 못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개별법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하나로 묶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특별법은 법 이용자 입장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 해석의 대상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어도 통일적으로 기술을 함으로써 법률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독립적인 별도의 용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또는 용어를 해당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임원 등 친족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는 임원 등의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각 법률에서 친족의 범위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를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6) 성승제(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자료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서는 ① 배우자, ② 6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의 인척을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범위에 대하여 「상법」에서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는 ①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②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③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④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⑤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⑦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⑧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⑨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임원 등의 친족의 범위를 상당한 광범위하게 나열하고 있으며, 이렇게 나열된 친족의 범위 또한 법률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친족의 범위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제한적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우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본인의 자녀(자녀의 배우자 제외) 및 손자(손자의 배우자 제외)를 친족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배우자, 성년인 자녀와 그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를 친족의 범위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자녀와 손자 및 형제자매를 친족의 범위로 보며, 이렇게 친족에 속하는 자의 자녀, 손자, 형제자매, 부모 등의 배우자도 친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하며, 친족의 범위를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보고 있다(「민법」 제767조 및 제777조). 현행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의 친족은 「민법」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보다 협소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친족의 범위는 해외 여러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광범위하다. 물론 친족의 범위는 각국의 고유한 전통과 관습에 의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별 친족의 범위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전통 및 관습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친족에 대한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각 법률에서 인식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 또한 통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 개별시장에서 기업의 경쟁제한행위

7) 본 내용은 최승재(2010),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이 되었다. 따라서 처음 제정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집중이 아닌 일반집중이나 소유집중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후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대구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992년에는 계열회사 상호채무보증의 제한 제도가 도입되었다[8].

1999년 2월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부활하였다[9]. 구체적으로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대상으로 하고, 부당지원행위의 제재수단인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는 지주회사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회사의 전환시나 지주회사의 설립시 부채비율 제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벤처지주회사 설립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소유한도를 완화하였다.

2002년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일괄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하고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제한을 단계적으로 축소 및 완화하도록 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개별적인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을 방치하게 되면 독점화된 기업이 자신의 독점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부를 기업으로 부당하게 이전시키게 되므로 이로 인한 경제적인 사중손실이 커지게 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시장이 아닌 기업집단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10]. 또한 기업집단을 규제하는데 있어 자산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산업의 특성이나 시장의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채무보증기업집단의 지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한도를 실증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채무보증기업집단의 지정제도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업규모, 산업특성, 시장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실증분석의 방법을 통해 설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채무보증기업집단의 지정제도의 기준은 글로벌 경제상황 및 국내 경제상황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변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상호에 맞게 변동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8) 1997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신규 상호채무보증은 금지되었다. 따라서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해소하도록 하였다.

9) 출자출액제한제도는 2009년 폐지되었다.

10) 최승재(2010),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p.22 수정후 재인용

Ⅴ. 결 론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의 정의를 비교해 볼 때, 계열회사의 범위보다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으며, 따라서 특수관계인에 계열회사가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자율적 공시가 인정되는 경우 유의적 관련성이 적거나 금액이 작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지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범위가 법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법」상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의 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 용어 등을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 규정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행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하나로 묶을 필요성이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어도 통일적으로 기술을 함으로써 법률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독립적인 별도의 용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또는 용어를 해당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친족의 범위는 해외 여러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광범위하다. 따라서 각 법률에서 인식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통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채무보증기업집단의 지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한도를 실증분석을 통해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채무보증기업집단의 지정제도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업규모, 산업특성, 시장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013), “5대 재벌 계열사의 특수관계자거래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 실태조사”.

금융감독원(2012). 「2011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금융회계팀).

김진태(2013),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와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김진태 · 배종일(2013), “적자회피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1권 제3호, pp. 33-56.

김진태 · 배종일(2014),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의 변동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9권 제4호, pp. 335-365.

김진태 · 안상봉 · 신용준(2013),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특수관계자 거래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28권 제6호, pp. 233-255.

김진태와 배종일(2013),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의 변동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9권 제4호.

박승록(2001),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효율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1-10. 한국경제연구원.

성승제(201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윤기향 · 박승록(2002),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02-20. 한국경제연구원.

전영순 · 노준화 · 배실수(2004), "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의 기재유인", 회계학연구 제29권 제2호. pp. 59-81.

최승재(2010),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Historical Consideration of Tax Rate Changes Effect to National Tax Revenue

Yong-Joon Shin*

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 on historically investigating a related-party transaction and indicating a scheme in a law. the result is as follow.

First, there is necessary for a related-party's scope to enact a special law. Also, it has to keep confusion minimum that the term describe consistently. When there needs to use related-party a separate way, it revises as it correctly use on purpose.

Second, related-party transaction is prescribed as a relative a wide range in a law. It is totally huge in comparing between countries. Therefore, the authorities reduce scope which a law becomes aware and need to accord its scope.

Last, the authorities establish asset limit with an analysis a criterion which a company which is existed as prohibit mutual investment or guarantee of an obligation in appointment system. It has to consider business scale, characteristic industry, and scale of a market, when a criterion is arranged.

〈Key Words〉 Related-party transaction,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Gift Tax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hingyeong University.